



# 인천광역시 기계·공장자금 추가지원 안내문

## □ 추가지원 개요

- (지원규모) 200억원
- (접수기간) **2019. 7. 2(화) 09:00** ~ 소진시까지
- (접수방법) 온라인접수[<http://bizok.incheon.go.kr>]
- (지원절차) ①접수 → ②대면심사[은행상담도장 날인 신청서 제출]→ ③서류보완 → ④지원결정통보 → ⑤대출[취급은행 차입신청 및 자금배정]

## □ 지원내용 :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은행대출승인 필요

구 분	기계구입자금	공장확보자금
지원대상	<b>기계장비*</b> 를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* 검사장비 및 환경시설 포함, 중고시설 제외	자가공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<b>임차공장운영*</b> 제조업체 * 자가공장기업은 증축(증축이후 제조면적 500㎡이상)에 한해서 지원가능
지원한도	<b>10억원 이내</b>	<b>10억원 이내</b>
한도산정	· 공급가액 잔금 범위이내	· [신축] 건축비 공급가액 잔금 범위이내 · [매입] 부지제외한 건물분 시가표준액 (준공전 건물은 건물분 실거래가 적용)
용자금리	<b>2.8%(변동)</b>	<b>2.8%(변동)</b>
용자기간	<b>8년</b> (3년거치5년분기별분할상환)	<b>8년</b> (3년거치5년분기별분할상환)

## □ 구비서류

구 분	기계구입자금	공장확보자금
공통 서류	① 사업자등록증 ③ 최근결산 재무제표 ⑤ 사업계획서	② 공장등록증(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)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
<b>추가 서류</b>	⑦ 구입기계 계약서 (또는 견적서) ⑧ 구입기계 카달로그 (또는 도면)	⑦ 임차공장증빙서류 (법인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) ⑧ [신축]공장설립승인서* ([매입]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서) * 제조면적 500㎡ 미만확보는 제출생략 (매입에 한해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) * 산단입주기업은 입주계약서로 제출 ⑨ [신축]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(또는 견적서) ([매입]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(계약서포함) 또는 검인매매계약서)

## □ 문의처 :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임유정과장 ☎032-260-0621